

남부민폴리페 국민임대 입주자(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자격 조건완화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5. 13.]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완화 주요내용 *

1. 입주자격 완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참조)

자격요건	일반조건	완화조건
주택	무주택	무주택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 소득기준의 경우 금회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최초 계약 및 1회차 갱신 계약시 임대조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회차 갱신계약부터 국민임대 정상요건 적용됨.

2. 입주자격 완화시 갱신계약 안내

- 소득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갱신계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신청 안내] - 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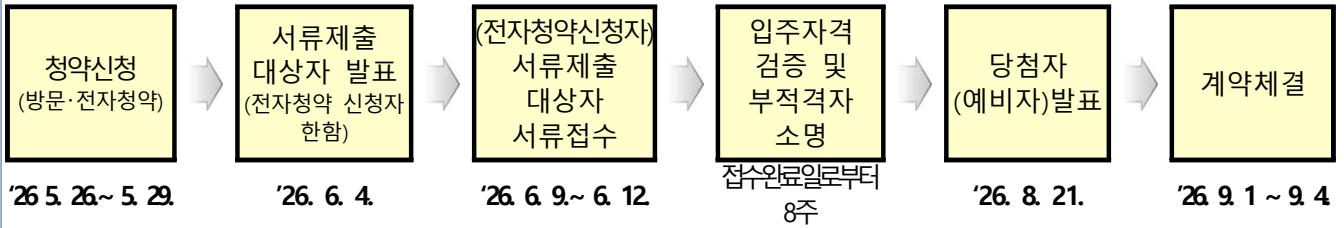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5. 13.**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자동차가액 등)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은 '13. 7월 최초 입주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개세대에 대한 입주자(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 금회 모집 주택의 공급형은 전용면적 51m², 59m²주택이며,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1인 가구도 신청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기존 임차인의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남부민폴리페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6-000186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입주자격 검증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차량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 3.25,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되며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24. 7. 8.)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나, '정보제공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 호수	최초 입주
남부민 폴리페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3, 남부민 폴리페 아파트	6개동, 782호 (국민임대 643호, 순환임대 139호)	2013.07.

- 금회공급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최대 30년까지 임대가능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모집대상 주택

주택형 (임대유형)	세대당 계약면적(m ²)				건설호수	금회 모집호수		구조/난방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 계		즉시 입주가능	예비 입주자	
51m ² (국민)	51.64	20.1289	19.845	91.6139	409	46	92	계단식·복도식 혼합 /개별난방
59m ² (국민)	59.76	23.9749	22.9654	106.7003	234	22	44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모집호수는 기존 신청자(대기자) 및 퇴거세대 발생 등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첨부된 주택형 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공급 형태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전환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보증금	임대료
51	30,530,000	6,106,000	24,424,000	349,300	30,000,000	60,530,000	185,400
59	35,330,000	7,066,000	28,264,000	404,100	40,000,000	75,330,000	199,100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조건표[붙임3 공급신청서 표 참고]에 정해진 금액 구간으로 전환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상호전환은 갱신계약시에만 가능합니다]
- 위의 전환임대조건은 예시이며, 향후 전환이율 변경시 전환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3)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p>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붙임1' 참조)</p> <p>*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p>																	
세대 구성원	<p>■ 세대구성원의 범위(입주자격 검증,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ffcc;"> <th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p>■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배우자</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직계존비속</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태아</td> <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 </tr> </tbody> </table> <p>■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p> <p>■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p> <p>■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p>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기타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5.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소득 및 자산보유(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금회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최초 계약 및 1회차 갱신 계약시 임대조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회차 갱신계약부터 국민임대 정상요건 적용(9. 유의사항 임대대상및조건)
 ※ 갱신계약 체결 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기본 조건		자격완화 조건 (소득기준 150%)	참고사항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3,432,027원 이하	5,720,044원 이하													
	2인가구	80%	4,693,016원 이하	8,799,405원 이하													
	3인가구	70%	5,717,900원 이하	12,252,643원 이하													
	4인가구		6,161,541원 이하	13,203,303원 이하													
	5인가구		6,528,890원 이하	13,990,477원 이하													
	6인가구		6,934,384원 이하	14,859,394원 이하													
	7인가구		7,339,879원 이하	15,728,311원 이하													
8인가구	7,745,373원 이하		16,597,228원 이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출산자녀 수</th> <th>총자산가액</th> <th>자동차가액</th> </tr> </thead> <tbody> <tr> <td>0인(기본)</td> <td>34,500</td> <td>4,542</td> </tr> <tr> <td>1인(+10%p)</td> <td>38,000</td> <td>4,996</td> </tr> <tr> <td>2인(+20%p)</td> <td>41,400</td> <td>5,45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산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출산자녀 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0인(기본)	34,500	4,542	1인(+10%p)	38,000	4,996	2인(+20%p)	41,400	5,450
	출산자녀 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0인(기본)	34,500	4,542														
	1인(+10%p)	38,000	4,996														
	2인(+20%p)	41,400	5,450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24. 7. 8.)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소명

- 주택소유여부,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접수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6.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배정 안내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확인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26000186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둔 신청자 중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 3.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4. **배점이 같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
- 5. 경쟁 발생시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번	가 점 항 목 (주택공급신청자 기준)	3점	2점	1점
1	신청자 나이(만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2	부양가족의 수(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3인 이상	2인	1인
3	부산광역시 계속거주기간 ※ 부산광역시 최종 전입일로부터 기산하여 입주자(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4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5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수(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주택관리번호: 2026-000186)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가입은행으로부터 납입회차 확인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제조업 근로자의 확인은 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상의 제조업으로 확인함	해당자		
8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해당자		
9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 (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배점 인정(아래 세부내용 참조)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1인 가구는 90%, 2인가구는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해당자		

연	감점 항목 (주택등급신청자 기준)	감점 배점
1	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있는 사람	-3

- 부산광역시 거주기간은 입주자(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부산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거주불명등록 등)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거주 및 계약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상의 제조업으로 확인함.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중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사람)
 -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7. 공급일정

공급신청서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p>전자청약 접수자</p> <p>• 기간 : '26. 5. 26(화) 10:00 ~ '26. 5. 29(금) 16:00</p> <p>※ 24시간 접수가능 (단, 시작, 마감일 제외)</p>	<p>• 발표일: '26. 6. 4(목), 14:00 이후</p> <p>• 장소: 공사 홈페이지, BMC 청약센터</p>	<p>전자청약 접수자</p> <p>• 기간 : '26. 6. 9(화) 14:00 ~ '26. 6. 12(금), 17:00</p>	<p>• 발표일: '26. 8. 21(금), 17시 이후</p> <p>• 장소: 공사 홈페이지, BMC 청약센터</p> <p>※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 처리기간(2~3개월 소요)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부적격자 소명을 거친 후 당첨자 발표함, 연기시 별도 안내</p>	<p>전자 계약</p> <p>• 기간 : '26. 9. 1(화) 10:00 ~ '26. 9. 4(금) 16:00</p> <p>※ 24시간 가능 (단, 시작, 마감일 제외)</p>
<p>방문 접수자</p> <p>• 기간 : '26. 5. 26(화) 10:00 ~ '26. 5. 29(금) 16:00</p> <p>※ 토요일공휴일 점심시간 (11:30~13:00) 제외</p>				<p>방문 계약</p> <p>• 기간 : '26. 9. 1(화) 10:00 ~ '26. 9. 4(금) 16:00</p> <p>※ 토요일공휴일 점심시간 (11:30~13:00) 제외</p>

7-1. 신청접수 - 전자청약, 현장접수

■ 전자청약 접수(인터넷 및 모바일)

- 청약방법 :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청약신청
- 신청기간 : **2026. 5. 26(화) 10:00 ~ 5. 29(금) 16:00** ※ 인터넷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간편인증 로그인(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뱅크샐러드 인증서)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전자청약 접수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 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의 1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청약 접수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전자청약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청약자께서는 서류제출일에 맞추어 인터넷으로 필히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접수

- 대 상 자 : 전자청약 접수가 어려우신 분(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등)에 한하여 현장 방문 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6. 5. 26(화) 10:00 ~ 5. 29(금) 16: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및 신청서류 일체(7-3. 신청서류 참조)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남부민폴리페 접수처
-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7-2. 전자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 6. 4(목) 14: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기간 : **2026. 6. 9(화) 14:00 ~ 6. 12(금) 17:00**
 -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혹은모바일)을 통해 BMC 청약센터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유의사항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해당 접수 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사진촬영 업로드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사진 촬영보다는 스캔파일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서류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병합 제출 권장)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며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당부 드립니다.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자산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6.05.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처
공통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붙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자 :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 청약신청 시 제출 	부산 도시 공사 공고문 붙임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붙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붙임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해당 자산이 없을지라도 '아니오'를 체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p>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붙임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 본 공고문에 별첨된 확인서 양식 출력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p>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p>행정 복지 센터</p>
	<p>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p>행정 복지 센터</p>
	<p>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모든 신청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 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p>행정 복지 센터</p>
<p>대 상 자</p>	<p>(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p>행정 복지 센터</p>
	<p>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발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p>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센터</p>
	<p>예비신혼부부 관련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p>행정복지 센터/ 부산도시 공사 공고문 붙임서류</p>
	<p>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제출 	<p>출입국 관리 사무소</p>
	<p>중소기업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중소기업 제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배점인정 받으려는 경우 	<p>중소기업현 황정보시스 템/건강보 험공단(재 직확인 회사)</p>
	<p>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로서 해당 배점인정 받으려는 경우 제출 	<p>건설 근로자 공제회</p>
	<p>청약순위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청약납입횟수에 따른 순위 및 배점 인정받으려는 경우 	<p>청약홈 또는 해당은행</p>
	<p>기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배점적용 불가 	<p>-</p>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 행정복지센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 확인원, 청약통장1면 사본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8. 당첨자(예비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6. 8. 21.(금) 17:00 이후 예정
- 당첨확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및 BMC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로 추첨하며 추첨하여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며, 계약포기 시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기회가 넘어갑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됩니다.**
- 신청인원이 공가호수를 초과한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으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인적사항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유선전화 및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 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 일 정 : 2026. 9. 1.(화) 10:00 ~ 9. 4.(금) 16:00 ※ 24시간 가능(단, 시작·마감일 제외)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 대상자 : 전자계약체결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자본인이 공사 방문 계약 가능
- 일 정 : 2026. 9. 1.(화) 10:00 ~ 9. 4.(금) 16:00 ※ 점심시간 11:30 ~ 13:00 제외
- 현장계약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장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남부민폴리페 접수처](#)
- 현장계약시 구비서류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납부영수증(전체 임대보증금의 20%) • 계약자의 도장 (본인 방문 시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류,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방식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9.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시기금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매 흡수년도 8월에 재계약을 진행하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대차갱신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소득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소득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재계약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2회차 갱신계약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시 변동가능)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 초과자의 1회차 갱신계약시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신청자격 참조)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공급 신청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 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의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입주 이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여 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p>당첨 및 계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7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태아수 감소로 당첨 최저점수 미만인 경우 당첨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 . 후에 주택소유,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관련, 소득입증서류 등 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공급 신청 시 자격사항이 신청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대료분을 임대인(부산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금액이 없을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보증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u>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u>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 및 결정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입주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조치함)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입니다.
<p>지구 및 단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시설, 혐오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상, 생활소음 및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른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침실 및 거실(주방포함) 바닥은 표준바닥구조로 시공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에너지성능등급 2등급, 초고속정보통신 인증 1등급**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를 관리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유면적은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세대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침실 및 거실(주방포함) 바닥은 장판지로 시공됩니다.
- 주차장은 옥내, 옥외 포함(상가는 미 포함)하여 총 624대가 설치됩니다.
- 본 사업지구내에 설치되는 상가(근린생활시설)는 분양시설물이며,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가(근린생활) 지붕층에 상가전용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며 주출입은 아파트 주출입구를 사용합니다.
- 101동 옥상에 오수정화조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102동 전면부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고, 측면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전면부에 배드민턴 코트가 설치되므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전면부에 중앙광장이 설치되므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전면부에 단지 외부로 출입 가능한 계단(높이 약 14.5m)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및 105동 사이에는 농구장이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은 접근성 및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101동, 102동 지하1층 및 지상층에 위치합니다.
- 지하주차동은 지상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직접출입은 불가능합니다.
- 단지내 도로 높이차는 약16m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단지내 도로에 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차량동선과 아파트 배치를 고려하여 4개소(단지주출입구, 제2주차장 지하3층, 제2주차장 지상층, 아파트102동 103동사이)에 설치됩니다.
- 쓰레기보관소는 각동별 균분배치를 고려하여 지상1층에 설치되어 분리수거에 따른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105동, 106동은 전면부에 옹벽이 존재하여, 조망권, 일조권 등 거주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06동 옥상에 오수정화조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106동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간 칸막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경량칸막이로 설치되며 옆집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는 바다와 인접하여, 해풍으로 인한 거주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남쪽과 서쪽은 각 송도자유아파트와 시영아파트와 인접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침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를 원 칙으로 합니다.

- 주변교통계획은 추후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 배관 설치로 인해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일부세대의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코오롱글로벌(주)컨소시엄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2026. 5. 13.

부산도시공사 사장

문의처

부산도시공사 임대사업처

☎ 051) 810 - 9901,9902,9904,9948

10. 위치안내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3, 남부민폴리페 아파트)



11. 찾아 오시는 길

<p>임대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처 : 051-810-9901,9902,9904,9948 ○ 공고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p>방문접수처 약도</p>	
<p>도로명 주소</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부산도시공사 1층 남부민폴리페 접수처</p>

12. 유형별 세대 구조

51형



전 용 면 적	51.64m ²
주거공용면적	20.1289m ²
기타공용면적	19.845m ²
계 약 면 적	91.6139m ²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기본	30,530,000원	349,300원
전환	60,530,000원	185,400원

59형



전 용 면 적	59.76m ²
주거공용면적	23.9749m ²
기타공용면적	22.9654m ²
계 약 면 적	106.7003m ²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기본	35,530,000원	404,100원
전환	75,530,000원	199,100원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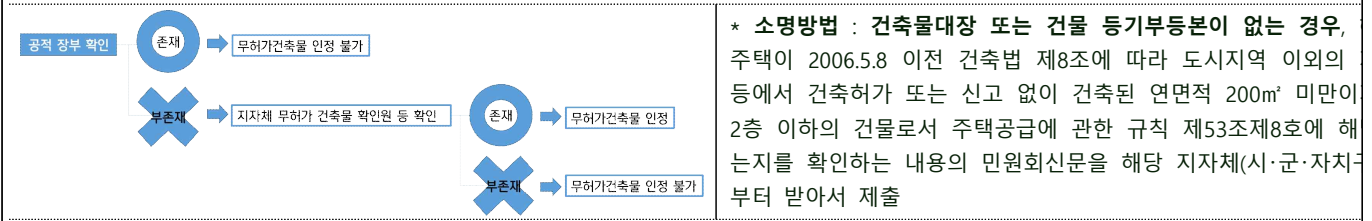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인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부)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 지방세정 자료	

		어업에 대한 권리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붙임3]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는 숫자 등 내용을 기입하고 가점해당항목에는 √ 표시를 해야 합니다.
 ※ 기입내용은 제출서류 및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주택 : [남부민폴리페아파트]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3

주택유형 <small>※ 신청이후 선택한 주택 변경 불가능</small>	[] 51형		[] 59형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선택	[]	30,530,000원	349,300원	[]	35,330,000원	404,100원
	[]	35,530,000원	313,500원	[]	40,330,000원	378,500원
	[]	40,530,000원	287,900원	[]	45,330,000원	352,900원
	[]	45,530,000원	262,200원	[]	50,330,000원	327,200원
	[]	50,530,000원	236,600원	[]	55,330,000원	301,600원
	[]	55,530,000원	211,100원	[]	60,330,000원	276,000원
	[]	60,530,000원	185,400원	[]	65,330,000원	250,400원
	※ 최고금액 이상 임대보증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	70,330,000원	224,700원
				[]	75,330,000원	199,100원
				※ 최고금액 이상 임대보증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결격사유 및 무효처리 대상여부	주택 소유여부 예[] 아니오[]	중복신청여부 (1세대 1주택) 예[] 아니오[]
임대주택 임차여부 및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여부	우리공사 및 타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임차중인 자) 여부 [] 예 []아니오	타 공공임대 (영구·공공·국민) 예비입주자 여부 예[] 아니오[]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주택)		전화번호(휴대전화)

세대주 및 세대원 <small>※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small>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 아래의 선정 순위 및 가점 해당자의 경우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하셔야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 확인 필수)

금회 모집입원 초과하여 경쟁 시 순위 선정	①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1순위 ~ 3순위 중 1개 해당사항 표기
	②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④ 위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⑤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가점 및 감점 해당자의 자가 평가서 (해당사항이 있는 내용만 작성 후 점수 표기)

	가점항목	3 점	2 점	1 점
가 점 해당자	① 신청자의 만 나이 / [생년월일 : _ _ _ _ . _ _ _ _] ※ 공고일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함	만50세 이상 []	만40세 이상 []	만30세이상 []
	② 부양가족수 (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 [총 _ 인] ※ 주택공급신청자(본인)를 제외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부산광역시 거주기간 / [전입일 : _ _ _ _ . _ _ _ _] ※ 부산광역시에 전입한날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단, 부산 지역외로 전출후 재 전입한 경우 최종 전입일 부터 산정함)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부모로 한정함	[]		
	⑤ 미성년자(만 19세미만) 자녀수(태아포함) / [총 _ 인]	3인 이상 []	2인 []	
	⑥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상의 납입횟수 / [총 _ _ 회] ※ 청약저축가입은행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납입한 횟수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주택관리번호 : 2026-000186)	60회 이상 []	48회 이상 []	36회 이상 []
	⑦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제조업 근로자의 확인은 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또는 사업자 등록증 업태상의 제조업으로 확인함	[]		
	⑧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⑨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 / 해당항목 : [1 - _ / 2 / 3] ※ 공고문 (5.입주자 선정기준 등 ■ 배점기준-가점항목9번)에 속하는 자 ※ 해당항목 : 1-(가)~(마),(사),(아),(자),(카) 기입 혹은 2, 3번에 체크	[]		
감 점 해당자	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있는 사람	- 3 점		

위 배점이 같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

본인은 공고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금회 신청서(붙임 제출서류 포함)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예비)입주자의 신청자격을 부산도시공사에서 박탈함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에서 보건복지부(소득 및 자산조회)에 의뢰하여 얻은 자료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국토교통부(주택소유 조회)결과 무주택 세대구성원중 유주택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격이 없거나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단, 소득·자산과 주택조회 결과 기준초과 또는 유주택자에 대한 소명결과 적격자로 판명될 경우는 제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필수)
 별첨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필수)
 별첨2. 금융정보 동의서 1부 (필수)
 별첨3.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1부 (필수)
 별첨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1부 (필수)
 별첨5.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1부 (해당자)
 별첨6.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해당자)
 별첨7.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해당자)
 ※ 증빙서류 일체 (공고문 확인하여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산도시공사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 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부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주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기타지방공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첨내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고유식별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디.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산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방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1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신청자 본인**'을 기재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정자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작성예시
		휴대전화번호										
신청자 본인	홍길동	1	2	3	4	5	6	-		홍길동	홍길동	O
		7	8	9	0	1	2	3				
		0	1	0	1	2	3	4	5			
배우자	김가나							-		성춘향	성춘향	X
자녀	홍다라							-		홍다라		X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 추가 세대원(4명 초과)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미숙지로 작성된 동의서 제출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외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6]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세입자작성)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건물주작성)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 **아니오**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단, 우편발송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단, 우편발송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마. 임대보증금(부채)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남부민폴리페아파트 국민임대를 신청함에 있어 남부민폴리페아파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 유형(국민·영구·행복) 아파트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삭제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남부민폴리페아파트 국민임대 **입주 후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됨**을 인지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는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각 서

(입주자격완화모집공고 신청자)

○ 성 명 : (서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남부민폴리페아파트 국민임대를 신청함에 있어 금회 공고의 완화된 입주자격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합니다. 추후, 갱신 계약시 공사가 아래의 사항을 적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갱신계약 요건 요약 -

구분	최초 입주자격요건	1회차 갱신계약	2회차 갱신계약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허용 (소득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소득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 적용될 수 있음,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불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가능) ※정상요건 충족할 경우 최대거주기간까지 계약 가능

1. 1회차 갱신계약 시 재계약 가능(소득이외 다른 요건 충족해야 하며, 입주시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 적용될 수 있음,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함)
2. 2회차 갱신계약 시부터 본래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기준이 적용되어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할증임대조건이 적용되며, 이때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는 갱신계약 불가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3. 갱신계약 시, 회차와 관계없이 최초 완화된 자격기준 외의 자격조건 초과시 국민임대의 일반적인 갱신계약기준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시 작성)

(수임인-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수임인에게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 . . .공고) 신청접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본인발급분), **인감도장**(위임인), **신분증**(위임인,수임인)
-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신청자)이 자필로 작성

(위임인-신청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